



보도시점 2025. 12. 12.(금) 14:00 배포 2025. 12. 12.(금) 12:00

‘안전·활력 국민 중심’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

- 허위조작정보·불법스팸 대응 등 안전성 강화, 방송 광고 규제 완화 -

지난 10월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(위원장 직무대행 류신환)는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주요 성과 및 향후 중점 추진과제 등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실시했다.

2026년부터 중점적으로 추진될 이번 업무보고는 ‘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*’ 및 ‘미래지향적 디지털·미디어 생태계 구축**’ 등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3대 분야, 15가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.

*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미디어 주권 향상(7번) : 방송 공공성·자율성 회복, 온라인 미디어 신뢰성 확보 등
** 미래지향적 디지털·미디어 생태계 구축(108번) : 디지털·미디어 산업 경쟁력 강화,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등

3대 분야는 ▲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▲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▲미디어 국민주권 강화이다.

우선,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①허위조작정보 대응, ②통신서비스 투명성·공정성 강화, ③온라인 불법행위 대응, ④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, ⑤신속하고 차별없는 재난정보 제공을 추진한다.

< 안전한 방송미디어통신 환경 조성 분야 주요 정책 >

- ① 자율규제 및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, ② 망 이용환경 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,
- ③ 불법스팸 과징금 및 몰수·추징(「정보통신망법」 하위법령 제·개정),
- ④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긴급조치권 도입, ⑤ 재난정보 종합 지원체계 구축 등

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를 위해서는 ①방송미디어 규제 개선, ②방송미디어 전주기 인공지능·디지털 기술 도입, ③지역미디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, ④디지털·미디어 산업 활성화, ⑤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이 추진된다.

<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한 산업혁신 활성화 분야 주요 정책 >

- ① 방송 광고·편성 규제 개선, ② 방송미디어 AI 기술 개발 및 제작 효율화,
- ③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프로그램 지원,
- ④ 청년 일자리 확충 및 디지털크리에이터 보호, ⑤ 방송·OTT 등 통합 법제 제정 등

마지막으로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를 위해 ①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 및 방송심의 책임성 강화, ②미디어 접근권 보장, ③디지털·미디어 문해력(리터러시) 교육 강화, ④신속한 분쟁 조정 및 불공정 개선, ⑤이용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을 실시한다.

< 미디어 국민주권 강화 분야 주요 정책 >

- ① 방송 3법 하위법령 제·개정 및 공영방송 제도 개선, ② 장애인 맞춤형 TV 보급,
- ③ 전 국민 미디어 체험·교육 확대, ④ 집단분쟁(통신) 조정제도 도입,
- ⑤ 다크패턴(눈속임 상술), 온라인 불편광고 규제 강화 등

이번 업무보고는 급변하는 디지털·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첫 번째 보고이며, 방미통위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.

붙임. 2026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

담당 부서	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동석 (02-2110-132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지은 (02-2110-1321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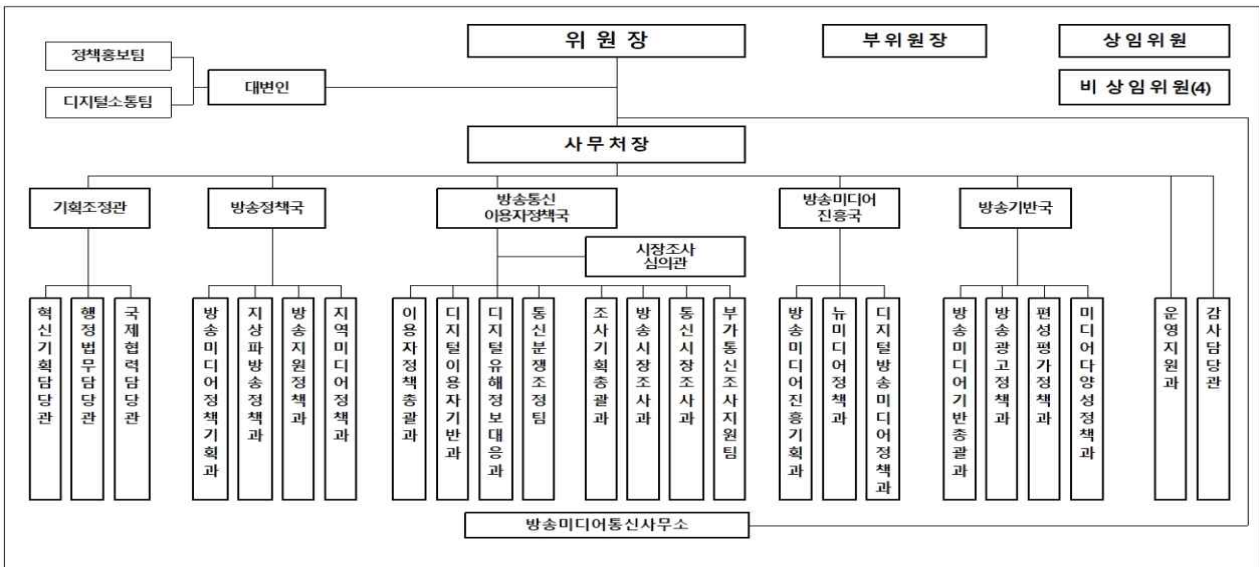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

2025. 12. 12.

I. 일반현황

1 기구 및 조직 현황

- 위원회 : 위원장(장관급), 부위원장·상임위원(차관급, 부위원장은 호선), 비상임위원 4인
- 사무처 : 1처 4국·3관 22과 4팀 / 1소속기관



2 인원 현황

구분	직급별	계	정무직	고공단	3.4급	4급	4.5급	5급	6급이하
합계	정원	316	3	8	7	16	21	95	165
	현원	320	-	8	8	16	18	106	164
본부	정원	272	3	8	7	16	21	90	127
	현원	276	-	8	7	16	16	102	127
소속기관	정원	44	-	-	-	1	-	5	38
	현원	44	-	-	1	-	2	4	38

3 예산 현황

(단위 : 백만원, %)

구분	2025 예산 (A)	2026년 예산 (B)	증감 (B-A)	(B-A)/A
계	298,099	263,058	△35,041	△11.8
일반회계	78,318	72,968	△5,350	△6.8
방송통신발전기금	219,781	190,090	△29,691	△13.5

Ⅱ. '25년 평가 및 향후 업무추진방향

① '25년 성과 및 보완점

- **국정(미디어 거버넌스 정비)** 방송미디어 정책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(이하 '방미통위')로 **일원화**함으로써 **통합적·효율적 추진체계 구축**('25.10월)
 -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(이하 '방미심위') 위원장을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고 인사청문·탄핵소추 대상으로 하여 **책임성 강화**
 - 미디어 간 경쟁·갈등이 심화되고 전통 미디어 시장 규모가 정체되는 환경 속에서 **방송미디어통신 전반을 아우르는 전략 수립 필요**
- **국정(방송 3법 개정)** 국회의 방송 3법 개정('25.8~9월)을 지원하여 **공영방송 등 운영의 공정성·독립성 및 방송편성의 자율성 제고**
 - ※ 「방송법」 공포·시행('25.8.26.), 「방문진법」·「EBS법」 공포·시행('25.9.9.)
 - 공영방송 등의 이사·사장 선임절차 개선*, 사업자·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제도화, 보도책임자 임명 동의제 도입 및 방송편성규약 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
 - * 이사 추천권자 다양화, 사장 선임 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·특별다수제(재적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의결) 도입 등
 - 다만, 개정 법률의 취지 구현을 위해 관련 시행령·규칙의 제·개정 필요
- **국정(방송미디어 AI 혁신)** 노동집약적인 방송미디어 생태계 전주기에 **AI 기술을 도입하여 방송 산업의 체질 혁신(품질↑,비용↓) 기틀 마련**
 - 방송영상 AI 데이터화(2만 시간), 제작·유통 전주기 AI휴먼·VFX(Virtual Effects) 등 AI기술 적용, 분산된 R&D 통합·확대(1,097억원, ~'30년)
 - 방송미디어 분야 AI 전환, AI 인력양성 등 방송산업 위기 극복 및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**지속적인 정책 추진 필요**

- (TV 수신료 결합징수) 국민이 매월 내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수신료 (2,500원)를 함께 고지하는 방식으로 「방송법」이 개정('25.10월 시행) 되어, 수신료 징수 비용 절감 및 공영방송 재원구조 안정성 확보
 - 정부는 법 개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(KBS)-한국전력 간 수신료 징수 위수탁 계약 변경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안착 지원
 - 향후 제도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하고, 관련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조치 추진

- **국정(불법스팸 차단)**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기술 개발·홍보 강화 및 불법스팸 제재 강화로 안전한 디지털 서비스 이용환경 조성
 - AI 기반 불법스팸 필터링 강화, 피해주의보 발령 등으로 이용자 피해 예방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불법스팸 신고량 대폭 감축*
 - * ('24.上) 2.17억 건 → ('24.下) 1.55억 건 → ('25.上) 0.38억 건
 - 불법스팸과 불법스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및 범죄수익 몰수·추징 도입('25.12월 「정보통신망법」 개정 예정)
 - 향후 신고처리 데이터 증가, 고도화되는 범죄수법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스팸신고 데이터 AI 기반 분석과 수사기관(검·경) 및 유관 기관(사행산업감독위 등)과 공유하는 차세대 스팸대응시스템 검토

- **국정(단말기 유통시장 경쟁 촉진)** 시장 경쟁 활성화 및 이용자 후생 증진을 위해 「단말기유통법」 폐지('25.7월) 및 후속조치 추진
 -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*를 구성·운영(9~12월)하여 '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시책(안)**' 수립(12월) 및 현장점검 등 실시
 - * 분야별 전문가, 이통3사, 제조사, 알뜰폰, 유통분과 등 참여
 - ** (주요 내용) ▲이통사, 제조사의 이용자 차별 유도 등 불공정행위 금지, ▲지원금 정보제공 강화, 단말기 선택권 보장 방안, ▲이용자 피해 방지 및 구제, ▲자율규제 촉진
 - 방미통위 구성 후 「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」(단말기유통법 폐지 관련) 개정 절차를 신속 추진하고 법령 위반 행위 집중 점검 추진

□ **국정(불법콘텐츠 신속차단) 방미심위 서면심의 대상(舊 디지털성범죄물)에 ‘불법 콘텐츠*’를 추가하여 신속히 심의·차단(24시간 이내)하고, 콘텐츠 저작권 보호 강화**(’25.12월 「방미통위 설치법」 개정 예정)

* 마약류 매매 정보, 도박 또는 사행행위 정보, 해외 저작권 침해 정보 등

○ 향후 AI 기술 발전 등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온라인상의 방대한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**사업자 책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**

□ **(동남아 불법 구인 게시글 대응) 경찰청, 플랫폼 사업자 등과 TF를 운영하여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모니터링·차단 유도**

< 모니터링 및 삭제·차단 현황(’25.10.17~12.4) >

구분	모니터링(방미통위, 경찰청, 방미심위 합계)	조치요청	삭제·차단
건수	5,773	5,194	4,131

○ 다만,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온라인상의 불법정보를 신속하게 삭제·차단하기 위해 **사업자의 자율규제 협조 강화 필요**

□ **국정(재난방송 접근성 강화) 수어를 이용한 재난방송을 확대하여 청각 장애인의 재난 안전 강화**(’25.12월 「방송통신발전 기본법」 개정 예정)

○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(KBS)가 한국수어 재난방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, 지상파·종편·보도PP는 한국수어 사용 권고

○ 다만, 법 개정과 더불어 현장에서 방송사가 한국수어통역사를 적극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

□ **국정(장애인 미디어 접근권 보장) 시·청각 장애인 TV 보급 확대**(’24년 32,000대→’25년 35,000대), 실시간·비실시간(VOD) 장애인 방송 지원 강화

○ 향후 장애인의 눈높이를 고려한 맞춤형TV 편의기능 개선 및 폐쇄자막, 화면해설, 수어방송 등 **장애인 방송 품질 향상 필요**

◆ **급변하는 디지털·미디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방미통위가 출범(25.10.1)하였으나, 적극적인 국정과제 이행 및 舊 방통위 현안 처리를 위해서는 조속한 방미통위 구성·운영 필요**

- ▶ 국회 입법 후속조치, 방송사 재허가·재승인, 시장조사 심의·의결 등
- ▶ 방송광고·유료방송 등 낡은 방송미디어 규제 완화
- ▶ 방미통위 출범에 따른 비전·정책목표 수립 등 중장기 전략 마련

② 향후 업무추진방향

□ 대내·외 업무 추진 여건

- (미디어 생태계 재편) 넷플릭스 등 OTT 확산으로 글로벌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국내 방송 산업은 매출·수익 하락, 가입자 감소 등 생태계 위기에 직면

※ (최근 10년 광고매출) 온라인 광고 '15년 3.4조원 → '24년 10.1조원(약 3배 증가)
 방송 광고 '15년 4.5조원 → '24년 3.2조원(약 28% 하락)

- (핵심역량으로서의 AI)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은 AI·디지털 첨단기술로 방송미디어 기획·제작·유통의 혁신을 선도하나, 국내 방송 산업의 AI 적용률은 10% 미만에 불과(KCA, '24년)

※ 유튜브 : 시청 시간의 70% 이상이 AI 알고리즘에 의해 유도('22년)

※ 넷플릭스 : 방송 제작 시 AI·VFX(Virtual Effects)를 이용하여 제작 시간을 1/10로 단축, AI 더빙 적극 이용('25년)

- (이용자 침해 증가) 고도화된 AI 기술이 해킹, 사이버테러, 불법·허위 영상 제작에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방송미디어통신 이용자 피해 급증

※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건수 : ('22년) 640건 → ('23년) 1,811건 → ('24년) 3,856건 → ('25년(~12.3)) 3,700건

□ 정책방향 : 안전하고 활력 있는 국민 중심 방송미디어통신 생태계 구축

안전한 환경 조성	산업 혁신 활성화	미디어 국민 주권 강화
① 허위조작정보 대응	① 방송미디어 규제 개선	①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 및 방송심의 책임성 강화
② 통신서비스 투명성·공정성 강화	② 방송미디어 전주기 AI·디지털 기술 도입	② 미디어 접근권 보장
③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	③ 지역미디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	③ 디지털·미디어 리터러시 강화
④ 안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	④ 디지털·미디어 산업 활성화	④ 신속한 분쟁 조정 및 불공정 개선
⑤ 신속하고 차별 없는 재난정보 제공	⑤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	⑤ 이용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

Ⅲ. 중점 추진과제

1 | 안전한 환경 조성

① 허위조작정보 대응 (국정과제 7-3)

- 법·제도 개선, 민관 협력체계 강화, 이용자 교육 등 다각적인 개선을 추진하여 온라인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사회적 피해 최소화 필요
 - (자율규제 활성화) 플랫폼의 신속한 접수·처리 등 사업자 책무 강화를 위해 자율규제 권고(안) 협약추진('26.上) 및 협의체 확대 운영
 - (제도 정비) 배액 배상제 도입,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·시행 의무, 팩트체크 활성화 등 「정보통신망법」 개정안 입법 지원('25.9월~)
 - (민간 팩트체크 활성화)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자발적 팩트체크 확대를 유도하고, 팩트체커 육성 및 민간 팩트체크 활동 지원('26.3~ 12월)
 - 방미통위 산하에 ‘(가칭)투명성 센터’를 설치하여 사실확인 단체 지원, 연구·교육 제공 등 팩트체크 지원 업무 수행 및 시스템 개발 추진
 - (이용자 교육) 전국민 대상 허위조작정보 판별 교육을 확대하여 이용자의 비판적 사고 함양 및 리터러시 역량 제고
 - 팩트체크 전국대회 개최, 동향 리포트 발간 등 심층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, 장기적으로 시민 팩트체커 양성
 - (국제협력 강화) 정보 무결성 강화 및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국제적 공조를 위해 국제 컨퍼런스 개최 및 국제 회의 참여
- 공정하고 투명한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체계를 구축함으로써,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건전한 공론의 장 형성 기대
 - 사업자 간담회, 민관협의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

② 통신서비스 투명성·공정성 강화 (국정과제 7-2, 108-4, 108-5)

- 온라인 상에 유통되는 불법·유해 정보에 대한 사업자들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 추진('25.下~)
 - 아동·청소년 과의존 예방, 서비스 오용자 제재, 불법정보 관리·차단 조치 의무화, 정보 검색·노출 기준 공개 의무화 등 내용 포함
 - 플랫폼 상의 정보·콘텐츠 건전성을 제고하고 각종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 보호 강화 및 플랫폼 사업자 책임성 제고 등 기대
 - 국내·외 사업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·의견수렴 등 실시
- 확증편향 등 알고리즘 기반의 추천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선택권 보장(「정보통신망법」 개정, '26년~)
 - 이용자가 알고리즘 추천 여부, 주요 변경사항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, 투명성 보고 의무 등 제도화
 - 서비스 이용 시 알고리즘 추천 여부 및 방식에 대해 이용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
 - 사업자는 영업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므로, 조정 방안(사업자 규모별 차등 의무, 알고리즘 정보 공개범위 합리화 등) 마련
- 일부 글로벌 사업자가 국내 인터넷망 제공사업자에게 망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아 역차별 문제 제기
 - 망 이용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한 망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(「전기통신사업법」 개정)
 - 망 이용료 지급의 법적 강제는 한-미 팩트시트 합의('25.11월),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

③ 온라인 불법행위 대응 (국정과제 108-4)

- 불법스팸 방지 역량을 갖춘 사업자들만 대량문자 전송 시장 진입을 허용하는 ‘전송자격인증제’ 시행('26.上~)
 -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및 몰수·추징 규정 시행을 위해 「정보통신망법」 하위법령 및 고시 제·개정 추진('26.3분기)
 - ‘전송자격인증제’ 시행으로 진입규제를 강화하고 불법사업자를 퇴출시키는 효과 및 부당이익 환수로 불법스팸 발송 유인 제거 기대
 - 규제 강화에 따른 사업자 이견이 예상되나 입법예고, 설명회 등 소통 강화를 통해 합리적인 제재 수준 및 기준을 마련

- AI 등 신기술을 악용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유통되고 있는 불법정보 차단 강화 및 사업자 자율규제 활성화
 - (디지털 성범죄물)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의무이행 점검 강화, 딥페이크 판별시스템 구축·식별대상 확대(영상→이미지) 등 모니터링 강화
 - (불법정보 차단) 소관기관이 명백한 불법정보로 판단한 경우 (방미심위) 심의 전이라도 사업자에게 삭제·차단을 요청하도록 법제도 개선
 - 불법정보에 대한 조치를 요청하는 창구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 관련 부처 간 이견 조정 필요(국조실 조정 요청)
 - (저작권 보호 강화) 국내·외 인터넷 관문망(ISP)은 물론, 이를 우회한 CDN(국내 임시저장 서버)까지 불법사이트(누누티비 등) 접속차단 강화
 - ※ CDN 기술적 관리적 조치 의무 시범 이행 및 이행사항 점검
 - 장기 누적된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조치 의무가 발생함으로써 CDN 사업자 이견 발생, 최신 정보부터 우선적 규제 적용 등으로 해소
 - 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다각적인 불법정보 대응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

④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(국정과제 108-4)

- 해킹에 의한 본인확인 정보 탈취·유출 사고 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본인확인 기관 점검 강화 필요
 - 본인확인 과정에서 이용자가 입력하는 정보(이름, 생년, 전화번호 등)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매년 1회 ‘기관 적합성 심사’ 실시
 -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기대

- 아동·청소년의 스마트폰·미디어 과의존 예방을 위해 ‘사이버안심존’ 앱 보급 확대 및 기능 개선(AI 기반 분석 및 태블릿 PC 전용 앱 개발 등) 추진
 - 앱 사용률 및 활용도 증가, 만족도 향상 등을 통해 온라인상 유해 정보와 스마트폰 과의존으로부터 아동·청소년 보호 강화 기대
 - 다만, 학생·학부모의 앱 사용에 대한 동기유발 요소가 부족하여 기능 고도화를 통한 민간 앱과의 차별성 확보 필요

⑤ 신속하고 차별 없는 재난정보 제공 (국정과제 7-3)

- 전 국민이 미디어를 통해 재난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 제정*, 기술지원**, 콘텐츠 제공***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
 - * 재난방송 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재난방송사업자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위해 「가칭재난방송지원법」 제정 추진('26.下~)
 - ** 방송 중계설비('25년 18대→'26년 218대), 기술지원('25년 51개소→'26년 190개소)
 - *** KBS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(90편), 수어 통역사 교육 콘텐츠 제작(20편) 등

- 미디어가 재난상황에서 전국민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회복하는 것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
 -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AI 활용 모니터링 등 신기술 활용

① 방송미디어 규제 개선 (국정과제 108-1)

- 미디어 이용행태 변화, 온라인 광고 성장 등으로 방송광고 시장 매출이 급감(지상파 '15년 1.9조원→'24년 0.8조원, 56%↓)함에 따라 **방송에만 적용되는 광고규제 불균형 해소 추진 필요**
 - 규제체계 전환(「방송법」 개정, '26년), 일총량제 확대·개선, 중간·가상·간접광고 규제 완화(「방송법」 시행령 개정, '26.上)

< 광고규제 개선(안) 주요 내용 >

규제체계	▶ 현행 7종을 3유형으로 개편하고, 새로운 방송광고 도입 근거 마련
일총량제	▶ 일총량제를 현행 17%에서 20%로 확대
중간광고	▶ 중간광고 허용 시간을 현행 45분에서 30분으로 단축 및 횟수 확대
가상·간접광고	▶ 크기제한 규제 완화(1/4→1/3) 및 가상광고 허용장르 확대(교양)

- 매체 다양화, 장르 융합 등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고, **방송사에만 부담으로 작용하는 편성규제 완화 추진**
 - 오락물(60%↓) 및 1개국 수입물(90%↓) 편성 규제 폐지, 외주제작 프로그램 의무 편성 규제 완화(지역방송 제외 등) 추진(「방송법」 개정, '26.)
 - ※ 외주제작 편성비율 개정 시 문체부 합의 필요(「방송법」 시행령 제58조제4항)
- **유료방송 재허가·재승인(7년), 소유제한(49%), 가입자 점유율(1/3↓) 규제 폐지** 등 「방송법」·「IPTV법」 개정 추진(「방송법」 개정안 국회 상정, '25.11월)
 - (성장기반) 규제에 따른 **행정부담 완화** 및 투자 촉진을 통해 **유료방송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**
 - (공적의무 법제화) 유료방송의 공적기능 약화 우려가 있는 **공적의무사항(상생방안 마련, 공정한 계약 체결 등)에 대해 대체 입법 추진**

② 방송미디어 전주기 A·디지털 기술 도입 (국정과제 108-2)

- 방송미디어 관련 AI 기술 개발, 제작과정 효율화,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**방송미디어 산업 활성화 추진**
 - (AI 기술 개발) 미디어 제작·편집, 개인 맞춤형 서비스 등 기술 개발 및 방송 제작 과정에서 기존 콘텐츠 변형·재구성 가능한 기술 개발
 - (제작 효율화) AI·디지털 기술을 방송콘텐츠 제작 쉐주기(기획-제작-유통)에 적용하여 제작 효율화(품질↑, 시간·비용↓) 추진
 - (글로벌 경쟁력 강화) 해외 마켓과 연계한 국내 방송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('26년~)
- 방송미디어 산업 AI 혁신으로 산업 구조 및 체질을 개선하고,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내 방송산업 재도약 도모 기대
 - 방송미디어 산업에 AI 도입률을 '28년까지 10% → 30%로 높이기 위해 고품질 방송영상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·활용 추진

③ 지역미디어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(국정과제 7-4)

- 지역성·다양성 구현의 책무가 있는 지역·중소방송, 공동체 라디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**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추진 필요**
 - (중장기 발전전략)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한 전략 마련을 위해 「제5차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」 수립(~'26.12월)
 - (프로그램 지원 등) 지역 생활·문화, 재난 정보 프로그램 제작 지원 및 프로그램 해외 판로 개척, 맞춤형 교육, 전문가 컨설팅 지원
 - ※ 지역·중소방송 예산 확대('25년 45억원→'26년 55억원) 및 공동체 라디오 지원 예산 신규 확보('26년 2억원)
- 지역미디어 활성화로 지역사회 공론의 장을 확대하고 지방자치 실현 및 지역성·다양성 등 제고 기대
 - 지역방송 등의 재정 여력과 전문 인력 감소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

④ 디지털·미디어 산업 활성화 (국정과제 108-2, 108-3)

- 청년층이 선호하는 디지털크리에이터* 등 새로운 직업 발굴·육성 및 미디어 스타트업 종합 지원을 통해 청년·소규모 기업 지원
 - * (산업규모) 매출액 : 5.5조원 종사자 수 : 4.3만명(30대 이하 비중 52%)(25년 정부 승인 통계)
 - (청년 일자리 확충) 1인미디어 콤플렉스(서울) 창업·제작공간 제공 및 일자리 허브 역할 강화 등 청년 성장 기반 조성
 - (크리에이터 생태계) 전업 크리에이터 양성을 통한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및 '청년 크리에이터 선도기업' 육성과 크리에이터 보호 생태계 조성
 - ※ (우수사례) 1기 입주 기업 '트웰브랩스'가 엔비디아 등에서 약 1,530억원 투자유치 성공
 - ※ 청년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산업 진흥을 위한 「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법」 제정('26년~)
- 국제 OTT 포럼 개최(연1회) 및 해외 OTT 시장·이용행태 조사 실시를 통해 국내 OTT 기업의 네트워크 구축과 해외진출 전략 수립 지원
- 크로스미디어랩 도입으로 방송광고판매대행사가 방송 뿐만 아니라 온라인·모바일 광고를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업무영역 확대
 - 광고시장의 중심축이 방송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방송·온라인·모바일 광고 통합 판매를 원하는 광고주의 수요에 부응할 필요
 - ※ 온라인·모바일 광고 업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지속 추진
- AI 학습 및 데이터 분석·활용 촉진을 위해 비식별 처리된 개인위치 정보의 활용범위를 산업 연구개발로 확대 추진

⑤ 미디어 통합 법제 마련 (국정과제 108-1)

-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방송·OTT 등 신·구 미디어를 포괄하고 미디어 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 법제 제정('26년~)
 - 개별법에 분산(방송법·IPTV법·전기통신사업법 등)된 미디어 규제 체계를 통합·정비하여 다양한 미디어 서비스 간의 규제 형평성 제고
 - 미디어 시장 공정경쟁 및 활력 제고가 기대되나, 관련 부처·사업자 간 규제 방향과 수준에 대해 이견이 있어 지속적인 의견 수렴 예정

① 합리적 공영방송 제도 안착 및 방송심의 책임성 강화 (국정과제 7-1)

- 방송 3법 개정 이행을 위해 동법 시행령·규칙 제·개정(~'26.上) 및 공영방송 제도 전반(책무, 평가, 재원 등)의 법제 개선 추진('26.下~)
 - 하위규정 정비를 통해 보도·편성 자율성을 제고하고, 공영방송 법제 개선을 통한 공영방송의 공적 기능 강화 및 국민 신뢰 회복 기대
- 공정성 심의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 입법 지원,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방송심의 규정 정비 등 제도 개선 추진

② 미디어 접근권 보장 (국정과제 7-3)

- 전국민 미디어 접근권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대 및 제도 개선
 - 농어촌 도서산간 지역민 등 미디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미디어 장비·시설을 통해 소외지역의 미디어 체험 기회 확대
 - AI 기술 활용, 음성-자막 변환시스템 활용도 다각화 등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 제고 및 OTT도 장애인방송 제공을 노력하도록 고시 개정('26.上)
- 시각·청각 장애인 대상으로 맞춤형 TV를 보급하고 양질의 장애인 방송 제작환경 구축
 - (맞춤형 TV 보급) 시각·청각 장애인 맞춤형 TV 보급을 확대*하고, 맞춤형 TV 리모컨의 편의성 개선을 위한 기술 개발 추진
 - * '24년 32,000대 → '25년 35,000대 → '26년 37,000대
 - (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) EBS 프로그램의 장애인 방송(자막·수어·화면 해설) 제작 지원 및 보급일정 단축('25.6월→'26.3월)
 - 장애인 방송 품질 제고를 위해 장애인, 수어통역사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품질평가를 실시하고, 수어통역방송 제작지침 마련

③ 디지털·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(국정과제 7-4)

- 전국 광역시·도별 시청자미디어센터* 전국화를 통해 전 국민 대상 미디어 체험·교육 지속 확대
 - * 12개 센터 : 부산('05년), 광주('07년), 강원·대전('14년), 인천('14년), 서울('15년), 울산('16년), 경기('19년), 충북·세종('20년), 경남·대구('23년)
 - ※ 경북 센터 구축('26년) 이후, 전남·전북·충남센터('27년 이후) 추가 건립 추진
- 생애주기별(유아·청소년·청년·노인 등), 대상별(장애인 등 소외계층) 맞춤형 디지털·미디어 접근, 활용, 제작교육 제공으로 미디어 활용역량 강화
- 민주시민 개개인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보를 얻는 역량을 키워,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 및 투명하고 책임 있는 사회 실현 기대
 - 다만,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 시 지역접근성·수요 등 체계적 검토가 필요하며 미디어 교육 예산 추가 확보 필요

④ 신속한 분쟁 조정 및 불공정 개선 (국정과제 7-3, 108-4)

- 증가하는 방송미디어통신분쟁 조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신분쟁 조직 확충, 방송분쟁 조정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
 - 집단분쟁 조정 제도 도입, 분쟁 조정 시 사업자 의무 참여 규정 신설 및 당사자가 합의한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등 추진('26.上~)
 - 방송분쟁 조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분쟁조정 대상 확대(사업자 ↔ 이용자) 및 직권분쟁조정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추진
- 해외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자 불만 처리, 해외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조정 활성화 등을 위해 제도 개선
 - 「정보통신망법」에 따른 제도 안내 및 관련 규정 준수 요청(대리인 정보 공개 의무 등), 의무 준수 현황 및 신규 지정 필요 사업자 파악 등 실시
 -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규제 실효성 제고 및 국내 이용자 권리의 효과적인 보호 기대(「정보통신망법」 개정 추진, '26.上~)

⑤ **이용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 환경 조성 (국정과제 108-5)**

- **국민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업계·전문가·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 수요를 적극 발굴**
 - 일상생활과 밀접한 통신서비스의 불완전판매 및 특정 서비스 이용 강요 등 **이용자 불편을 초래하는 통신분야 불공정행위 집중점검**
 - ※ 예시) △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입주자의 인터넷 통신사 선택권 제한, △대포폰 개통과 관련된 알뜰폰의 가입 절차 미준수, △통신사, 유통점의 이용자 중요사항 미고지
- **앱마켓사의 각종 불공정행위로 인한 중소 앱 개발사 및 이용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하고 개방적인 앱마켓 생태계 조성**
 - 인앱결제* 강제금지 규정을 보완하는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50조(금지 행위)를 개정**('26.下)하여 규제의 실효성 제고
 - *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·이용하는 과정에서 콘텐츠(이모티콘, 게임 아이템 등) 구매 등을 위해 앱 내부에서 결제하는 것을 의미
 - ** ①구글·애플 등 앱마켓 이외의 제3자 앱마켓 설치·실행하는 행위 허용, ②외부결제에 대한 안내·홍보 등 허용, ③과징금 부과 기준 상향(현행 3%→6%) 등
 - 국내 중소 앱 개발사의 경쟁력을 제고하고, 이용자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- **온라인 플랫폼에서 이용자를 기만하고 불편을 유발하는 행위 규제 및 이용자 보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「전기통신사업법」 개정 추진('26.下)**
 - 이용자의 선택을 왜곡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숨기는 등 이용자를 기만하는 화면 또는 메뉴를 조작하는 다양한 **다크패턴 행위**(눈속임 상술) 규제
 - AI·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낚치광고 등 이용자 의사에 반하여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**신유형 온라인 불편광고** 규제
 - 온라인 플랫폼 관련 이용자 권익 제고 및 건전한 이용환경 구축이 기대되나, **규제 신설에 대한 이견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 추진**

IV. 주요 쟁점이슈

① 인간 중심의 안전한 AI 서비스 기반조성

□ 개요

- 인간 존중에 기반한 AI 기술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, 모두가 함께 준수해 나가야 할 AI 이용자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주요사항 법제화
- 또한,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AI 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 AI를 악용한 범죄 및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범 마련

< 국정과제 108-4,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>

- (AI 역기능 대응) 딥페이크 성범죄등 AI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「(가칭)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보호법」 제정 추진
 - 심각한 권익침해 등과 관련한 네거티브 형식의 사후규제를 도입하고 AI 서비스 선택권 보장,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체계 마련

□ 추진 경과

- 「AI 이용자 보호법」 제정 연구반 통해 초안 마련 : '24.~'25.12월
 - ※ 기술·산업·법률 분야 전문가로 구성, '24년 20회, '25년 5회 회의 개최하였으며, 「AI 기본법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, 통신AI 이용자보호 특별법으로서의 내용으로 구성 중

< 법률안 초안 주요 내용 >

구 분	주요 내용
불법정보 생성·유통 금지	생성을 금지하는 불법정보(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)를 규율하고, 사업자에게 불법정보 생성 및 유통 방지 의무 부과
청소년 이용자 특별보호	만 19세 미만 청소년 대상 유해정보 생성, 과몰입 유도를 방지하는 기술적·관리적 조치 부과 및 관계형 AI 서비스 특별 규정 도입
분쟁 조정 제도	신속한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분쟁조정 제도 도입

□ 이해관계자 입장

- 「AI 이용자 보호법」에 대해 사업자는 규제 부담 증가로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나,
 - 시민단체·이용자단체 등은 AI 서비스 이용자 보호 필요성에 공감
 - ※ 토론회, 공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 반영하는 등 적극 협의 추진

② 빅테크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

□ 개 요

- 구글·애플의 자사 결제 방식(인앱결제) 강제 관련 시정조치(안) 심의·의결 시, 미국 측이 자국기업 차별규제 이슈를 제기*할 가능성 존재
 - * 미국의 무역대표부(USTR), 의회, 단체 등은 우리나라의 빅테크 기업 규제가 미국의 글로벌 기업을 겨냥한 역차별이라는 입장을 표명('25.2.)

□ 추진 경과

- (사실조사) 특정한 결제방식 사용 강제, 앱 심사 지연 등 「전기통신사업법」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조사 실시('22.8.~'23.4.)
- (조사결과)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, 시정조치(안) 통보('24.7.), 시정조치(안)에 대한 사업자 의견 검토 및 과징금액 산정 등 진행(~현재)

□ 이해관계자(구글, 애플) 입장

- 한국의 「전기통신사업법」 개정('21년) 취지에 따라 앱 개발사들에 대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않도록 제3자 결제방식*을 세계 최초 도입('21년)하였으며, 자사 결제 방식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
 - * 앱 마켓에서 결제시스템을 앱 개발사가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, 앱 마켓에 제공하는 수수료가 자사 결제방식(30%)에 비해 다소 저렴(26%)

□ 향후 대응방안

- 방미통위는 그간 국내·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위반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엄정한 조치 실시
 - ※ (어도비) 해지권 제한, 중요사항 미고지로 과징금 13.09억원 부과('23년)
 - (트위치) 화질 저하 및 VOD 서비스 중단으로 과징금 4.35억원 부과('24년)
 - 방미통위가 구성되면 구글·애플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법행위 및 처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 간 논의 후 심의·의결 추진
- 또한 한·미 양국 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부,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
 - ※ 현재 한·미 간 조인트 팩트시트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도 고려